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및 비공개 열람 제도 도입〉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0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진석 · 김기표 · 이해식 · 박상혁 · 한민수 · 진선미
전용기 · 김주영 · 김용만 · 박정현 · 복기왕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 의안번호 : 1625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 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 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

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
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
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사청문회 분리 및 공직윤리청문회 비공개 실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생략) <u><신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u>
② (생략)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u>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검증하여 직위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인사청문회가 개인신상에

관한 과도한 의혹 제기와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윤리성과 업무능력 양 측면에서 각각 충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회의공개 원칙¹⁾과 회의 비공개를 인정하는 예외²⁾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³⁾에 대해 의사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⁴⁾

-
- 1)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대한민국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3)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 및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안번호 제1673호, 제11410호, 제12494호, 제12550호 및 제12981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임.⁵⁾

4) [2022. 1. 27. 2018헌마1162 등 헌법재판소 결정 중]

(1) 헌법 제50조 제1항의 해석

… 의사공개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회에서 하는 토론 및 정책결정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이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공개원칙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헌재 2000. 6. 29. 98헌마443등 참조).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의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후략)

(2)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보위원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재량의 남용, 밀행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이므로, 정보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한 회의를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 또는 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는 것도 공청회와 인사청문회뿐이어서(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단서), 이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보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정보위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무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회의를 공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5) 법원행정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81호)에 대하여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의 내용·범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등이 충돌하는 사항이며 현행법상 청문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공개 열람 제도 신설

개정안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료제출 대신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가 비공개로 열람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생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료의 제출을 대신하여 비공개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주의의무) ① (생략)	제18조(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u>비밀</u> 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 ----- ----- <u>비밀</u>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열람한 자료를 포함한다)----- -----.

현행법⁶⁾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음.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재규정도 없어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 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열람한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안번호 제1673호, 제11410호, 제11461호, 제12550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표-3] 유사 개정안별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주요내용
1673	권철승의원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이 위원회에 비공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1410	허 영의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나 그 밖의 사유로 자료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공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11461	김예지의의원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부당한 침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비공개열람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2550	김병기의의원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문 의 처

02)6788-5015